|  |  |  |
| --- | --- |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4호<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17년 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2017년 2월 24일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제9조를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 지출로서,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 범위 내의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표한다. |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的决定**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六十四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的决定》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六次会议于2017年2月24日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2017年2月24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六次会议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作如下修改：将第九条修改为：“企业发生的公益性捐赠支出，在年度利润总额12%以内的部分，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超过年度利润总额12%的部分，准予结转以后三年内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